

#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 BF 인증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Architectural Approach of Universal Design

- Focused on BF certification cases

성기창\* Seong, Ki-Chang

### Abstract

**Purpose:** Barrier-Free Design for all is architectural approach of Universal Design. Since BF(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began wit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system after its implementation in 2008, the demand for certification continues to increase as the subject of certification obligations expands to public buildings and public facilities in December 2021, so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basic direction of the building plan for everyone through analysis of BF certification cases. **Method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nd the concept of barrier-free, that is, after confirming that BF certification is an architectural approach of universal design,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a safe and convenient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the direction of BF certification development through BF certification ca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Result:** The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is a very useful frame for implementing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s architecture in the areas of urban and architecture. **Implications:** The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seek a new developmental frame.

주제어: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디자인, BF인증제도

Keyword: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 1. 서론

### 1.1 배경 및 목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의 주요이념인 정상화이론(Normalization)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갖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장애를 없애고 실질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제도화가 국가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장애인의 생활을 고려한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상적인 발달 경험의 부족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려웠다. 또한 이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하락과 역할 축소로 가치저하 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치저하 된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체적, 물리적 기능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속에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있다. 즉, 장애가 없는 시민이 참

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추구 되어야 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웃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특별하고 부분적인 재활서비스접근방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장애'로 문제화시키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관련 복지제도의 핵심인 것이다(성기창, 2007a). 특히, 신체적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총체적 환경의 기본 토대는 도시 및 건축의 공공성과 관련된 건축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므로,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생활환경 속에서 주어진 건축적, 물리적 장벽들로 인해 사회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부회장, 교수, 건축융합학부, 한경국립대학교 (주저자: skchope@naver.com)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에 장애를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파악한 새로운 정의를 발표하였다. 즉, 사회적 참여(participation) 가능여부가 장애의 최종 결정 요인으로 정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를 장애인과 환경과의 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건축의 공간 및 형태와 일상적 생활영역의 관계를 건축형식으로 이끌어 내는 건축적 공공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성<sup>1)</sup>은 도시와 건축을 포함한 인간의 환경에서 일반적 원리로 간주되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도시를 실질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 공공성의 구체적인 한 예로서 무장애(barrier-free) 도시 및 건축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즉,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은 건축적 공간 및 형태를 다양한 모든 인간의 생활영역과 상호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만들기 인증(이하 BF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 공공성이란 서구 계몽주의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자유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이다. 그 의미는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것으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반적인 접근 혹은 참여의 원리로서 공공장소 또는 공공집회와 관련된 공공성이며, 다음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업무의 투명한 공개의 의미를 갖는 공공성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정치 분야에서의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권력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 원리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규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나 권력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작용하는 건강한 발전을 위한 구조원리로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건축에서도 공공성은 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민주시민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정치론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토대는 자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하므로, 건축의 공공성 또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場)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것이 서구 사회에서 시민광장의 기원이었으며, 건축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아고라(agora), 스토아(stoa) 또는 포룸(forum) 등 구체적 공간으로 표현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외부의 열린 공간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를 통해 서구건축의 전형(典型)으로 자리 잡았으며, 계몽주의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능의 중요한 건축공간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열린 공간으로서의 건축적 공공성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즉 공평성의 원리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의 무한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주장한 바 있듯이, 한 개인의 자유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에서 조정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평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실행될 때 모두의 관점에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회구성원에 두루 관련되다는 도시 및 건축의 공공성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주로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건강향성인 남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경제 및 산업중심주의 사회에서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 도시 및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장애(barrier-free) 도시 및 건축 개념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성기창, 2007b).

BF인증은 '08년 시행 이후 자발적 참여제도에서 시작하여 '15년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 '21년 12월 증·개·재·축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로 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sup>2)</sup>이므로, BF인증사례의 분석을 통해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우리사회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점을 찍는 등 인구학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축적 환경을 만드는 전문가 및 관계자, 실무자들은 안전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전은 우리 삶의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으로서 적용된 BF인증사례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사례는 BF인증의 본인증 획득시설 중, 우수등급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외부공간, 주차장, 출입구, 내부시설, 위생 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무장애(barrier-free) 도시 및 건축개념에 대한 정립과 현실화가 우리보다 앞서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를 토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무장애 도시 및 건축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념, 제도화 등이 어떻게 변화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무장애(barrier-free)개념과의 상관성 즉, BF인증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임을 확인한 후, BF인증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적 환경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적 특성을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BF인증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무장애(Barrier Free)와 유니버설디자인

### 2.1 무장애(Barrier Free)

독일의 주거공간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주거건축의 주요 관심사는 더 많은 독립된 가구에게 소형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요증가와 대량공급에 따른 20년대의 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들이 근대건축의 논쟁 속에서 60-70년대의 혁신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노인 또는 전쟁부상자들의 요구들에는 특이할 만한 고려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보조기구 산업에서만 이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요 관심사 또한 파괴된 주택의 재건과 새로운 주거공간의 공급이었다. 이러한 주거공간의 계획 시, 주요목표는 합리성과 최적성, 최소비용 및 비용절감이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적은 수단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거건물은 오로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설계되었고, 특히 서민주거의 경우 '가족중심의 집합주거'라는 이상 속에서 형성된 50년대의 주거건축법의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 즉, 주거 내의 모든 공간은 특정 용도가 부여되었으며, 공간의 배치는 합리적 관점에 따라 구성되었다. 특히 각 실의 기능에 따른 공간규모는 DIN 규정<sup>2)</sup>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이는 용도변경에 따른 기능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배제하였다.

이러한 주거계획은 사용자의 변화 및 다양한 용도변경에 따른 가변성을 현저히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는 무장애 건축계획에 대한 개념적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DIN 규정은 서민주거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 90년대 초반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 규정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였으며, 그 어떤 다양성을 위한 대안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즉, 거실의 규모는 15-20㎡, 부부침실은 8-15㎡, 자녀침실은 최대 10㎡ 등으로 명문화하였고, 정확히 그 용도와 규모에 맞게 계획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침실에서 침대의 위치 및 콘센트의 설치위치까지도 규정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가변성의 결핍은 주거에서의 무장애 공간적 상황을 제한하게 되었다.

70년대의 과제는 지불가능한 주거공간의 제공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성장을 통한, 합리적 가격으로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 50년대의 합리적 기능주의가 이 시기에도 유효한 건축개념이었으며, 그에 따른 해법은 단위평면 및 주거동의 반복에 따른 대규모 단지조성이었다. 50년대의 주거공간과 비교할 때, 70년대의 주거계획은 보다 높은 설비수준과 더 넓은 공간규모였다. 이러한 변화는 1940년경에 태어난 전후세대가 보불전쟁 이후 독일에서 건설되었던 여유 있는 공간적 볼륨을 지닌 도시집합주택에서의 주거경험이 반영된 결과이다. 즉 독일의 구(舊) 주거양식의 특징은 보다 큰 공간적 볼륨(넓이와 높이)과 다양한 주거기능을 중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었다.

따라서 60년대 말과 70년대의 독일 주거건축에서 주요 관심사는 가변적인 공간구성이었다. 이에 따라 주거공간의 가변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이동형 벽면 또는 벽체의 경량화 등과 같은 건설시스템이 추구되었고, 이러한 가변적 공간구성에 대한 건축개념이 무장애 주거공간에 대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주거기능과 사용자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실과 침실이 유사하게 계획되었으며, 주거공간의 기능변화가 문제없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노인이 됨으로서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신체적 기능변화와 다양한 생활패턴을 가진 사용자의 변경에 대한 주거공간의 가변적 적응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생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1974년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Wohnungen fuer Schwerbehinderte)"라는 DIN 18025 규정이 무장애(barrier-free) 건축개념의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및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참여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건축계획기준(Bauliche Massnahmen fuer Behinderte und alte Menschen im oeffentlichen Bereich)"이라는 DIN 18024 규정이 보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에서 사용된 계획개념은 실질적인 장애물의 제거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포괄적인 무장애(barrier-free) 계획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적합한(behindertengerecht)" 또는 "장애인 친화적인(behindertenfreundlich)" 개념으로 직접적인 특정대상에 대한 접근방식이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두와 함께하는 동등한 사회참여라는 정상화의 실현에 포괄적 제한을 갖게 되므로, 1987년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전면개정을 위한 위원회가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의사, 건축가들로 구성되었고, "장애인에게 적합한(behindertengerecht)" 또는 "장애인 친화적인(behindertenfreundlich)"이라는 기능주의적 특정대상 계획개념을 보다 실질적이고 원천적인 모두를 위한 관점에서 "무장애(barrier-free)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결과 1992년 12월에 "무장애 주거(Barrierefreies Wohnen)"라는 DIN 18025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다. 이 시점부터 독일에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behindertengerecht)" 또는 "장애인 친화적인(behindertenfreundlich)"이라는 직접적인 특정대상의 개념이 관련 전문용어에서 전면 사라지고 모두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앞서 언급한 도시의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DIN 18024 규정을 무장애 개념으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의 주정부에서 도시 및 건축 관련 기술조례로 DIN 18024와 DIN 18025<sup>3)</sup>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DIN 18024와 DIN 18025는 2006년 "무장애 건축계획기준(Barrierefreies Bauen, Planungsgrundlagen)"이라는 하나의 DIN 18030 규정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의미는 기능주의적 특정대상 중심의 건축개념에서 보다 확실히 벗어난 일반적 도시 및 건축계획 개념으로 보편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DIN 규정에는 고령화됨으로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중, 일반적인 감각기관의 퇴행에 따른 도시 및 건축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들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위급 시 피난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되었다<sup>4)</sup>.

3) DIN 18024 Teil 1: 무장애 건축, 도로, 광장, 보행로, 공공교통시설, 공원 및 놀이시설을 위한 계획기준(Barrierefreies Bauen, Strassen, Plaetze, Wege, oeffentliche Verkehrs- und Gruenanlagen sowie Spielplaetze, Planungsgrundlagen)

DIN 18024 Teil 2: 무장애 건축, 접근 가능한 공공건물과 작업장(Barrierefreies Bauen, Oeffentlich zugaengige Gebaeude und Arbeitsstaetten, Planungsgrundlagen)

DIN 18025 Teil 1: 무장애 주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주거계획기준(Barrierefreie Wohnungen, Wohnungen fuer Rollstuhlbenutzer, Planungsgrundlagen)

DIN 18025 Teil 2: 무장애주거, 계획기준(Barrierefreie Wohnungen, Planungsgrundlagen)

4) 위 내용은 무장애도시를 위한 독일의 제도화 현황(성기창, 2011)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2) DIN 18010 서민주거건축을 위한 공간규모(Raummasse fuer den sozialen Wohnungsbau)

## 2.2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은 60년대 미국의 시민권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상이군인과 (소아마비)장애학생의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에서 출발하였다. 즉 1961년 미국표준협회(후에 ANSI로 변경)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빌딩을 위한 국가표준을 수립하였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철학의 변화에 따라 1973년 재활법에 내재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포함하였다. 이후 접근성 개선을 위한 표준정립과 법제화가 미국에서 꾸준히 이어져오다가, 진정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의 달성은 기준을 높이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디자인 어프로치로써 유니버설디자인으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은 개인의 능력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 사용, 사회참여를 고려하는 통합적 환경의 조성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수치화된 기준을 통한 표준의 달성'이 아니라,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한 우수사례의 축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사용자 참여, 지식의 소통, 축적, 전파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Steinfeld, E & Maisel, J, L. 2012: 67-91). 왜냐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의 본질적 속성은 지속적으로 인권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점진적이고 창의적인 해법방안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능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제품을 생성하기 위한 디자인 개념을 갖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sup>5)</sup>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은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차별이나 별도의 장치 없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들과 같은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인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inclusive design, lifespan design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결국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이 변하게 되므로 그 필요성이 삶의 질과 관련되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독립적으로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을 끌어내었으며, 결국 사용편의성(usability)의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이 나 환경의 설계에서 먼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이용의 편리성 및 사용자 선택성 향상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 응용 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폭넓은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평생 디자인'으로도 알려진 유니버설디자인은 어린이, 성인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상품 창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환경과 상품은 정상인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겨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독립생활을 유지하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요구'라는 라벨을 없애 주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동일한 존재로, 즉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고 사회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실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접근방법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별한 요구'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을 좀 더 차별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분리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특성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이 특성들이 일상생활 속에 수용되면 다양한 사람 간의 유사성 또는 동등함이 더 확실해진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상대성과 다양성의 표현,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개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의 감정이입을 생각할 때,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에 도입된 개념이 유니버설디자인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시대정신에서 기능주의적 특정 대상에서 벗어난 모두를 위한 물리적 환경창출개념이 다르게 표현된 무장애(barrier-free)개념은 즉,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도시 및 건축의 물리적 환경구축 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는 모두를 위한 BF인증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인 것이다.

5) 유니버설디자인은 Ron Mace가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접근'이라고 정의하였듯이, 보다 많은 사람이 연령이나 다양한 신체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디자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포용성 있는 포괄적 디자인개념이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은 1970년 Mace가 지원성(supportive), 융통성(adaptable), 접근성(accessible), 안전성(safe)의 4대원리를 제시하면서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된 이래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과 원리가 정리되고 확장되어 왔다. 특히, Connell의 경우에는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융통성 있는 사용(flexibility in use),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intuitive use), 인식 가능한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사고나 잘못의 포용(tolerance for error), 적은 신체적인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등의 7대 원칙으로 기본개념을 확장시켰다.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가장 함축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사용자 중심적인(user-oriented) 디자인이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 방식은 이윤추구 보다는 좀 더 사회지향적인 것으로 평등과 융통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성이 강조된다(Universal Design Center, 1997).

## 3. BF인증사례조사 및 분석

### 3.1 조사개요

BF인증 사례조사는 수치화된 기준을 통한 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설 현황 및 건축적 특성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BF인증 평가항목 기준을 준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영역별로 외부공간, 주차장, 출입구,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다<sup>6)</sup>.

1) 외부공간

① 접근로 및 횡단보도

- 대지 내 건물 주출입구까지 차로와의 교행 없이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
- 차로 교행지점 발생시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행로상 장애물(가로수, 휴게의자 등)은 별도의 장애물 구역(식재존 등)을 두어 집적 설치
- 횡단보도 경계에 가변식 블라드 등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억제

[표 1] 접근로 및 횡단보도

			
재료차이로 구분된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통로	보차가 완전 분리된 접근로	장애물 구역으로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된 접근로	고원식 횡단보도 및 가변식 블라드가 설치된 횡단보도

② 외부 수직이동시설

- 외부 승강기 출입구는 무단차 처리를 하여 휠체어 등의 이동에 장애를 제거 하였으며, 우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캐노피 및 출입구 전면 배수 설비를 설치
-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 계단코의 논슬립처리는 색을 달리하여 시작과 끝부분의 인지성을 향상시켰으며, 계단 양끝은 2cm이상의 추락방지 턱을 설치하여 지팡이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 레벨극복을 위한 경사로는 1/18이하의 기울기로 설치

[표 2] 외부 수직이동시설

			
우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캐노피	무단차 처리 및 우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된 승강기	인지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계단코 논슬립 시설	높이차이 극복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 (1/18이하, 양측 손잡이 설치)

③ 동선 경로안내 및 관련시설

- 구름지 등 1/18이하의 기울기로 보행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 우회경사로 혹은 승강기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

6) 영역별 주요 사례분석은 본 연구자가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 건축지적과(2016)의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보차혼용일 경우 질감차이가 나는 바닥재질 등으로 보행안전통로와 차로를 구분하여 안전성을 확보
- 시설의 주출입구 및 주요 편의시설까지 연속적인 안내시설 설치
- 접근로상 독립기둥, 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 주변 바닥재질 변화를 주어 경고표시를 함

[표 3] 경로안내 및 관련시설

			
경사가 급한 접근로 등에 완만한 기울기의 우회경사로 및 안내시설 설치	보차혼용 도로에서 보행로와 차로 경계석 설치로 보행안전통로 확보	대중교통시설과 단차 없이 수평연결 및 출입구/주요시설에 대한 위치와 방향안내시설 설치	접근로상 독립기둥 등의 보행장애물 주위 접근 방지시설 설치

2) 주차장

①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와 보행안전통로

-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안전구역과 주차면을 구분설치
-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위치 안내표지판(바닥 및 입식)을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식별성 높게 설치
- 주차면과 보행안전통로 사이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의 기울기로 경사로 설치
- 주차구역에서 시설 주출입구까지 보행안전통로를 연속적으로 설치
-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폭 1.5m이상의 보행안전통로 확보
- 주차구역 뒷면(차로반대쪽)에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 보행안전통로는 색상 혹은 재료를 달리하여 식별성 높게 설치하며 바닥에 인근 승강기, 출입구, 위생시설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

[표 4]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와 보행안전통로

			
보행통로 및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설치 입식 및 바닥안내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보행통로1.5m 이상 연속 설치 부분경사로 기울기 1/12이하	보행안전통로는 1/18이하의 기울기로 설치	보행안전통로는 색면, 빗면 혹은 재료를 달리하여 식별성 높게 설치

### 3) 출입구

#### ① 출입문 형태

- 휠체어사용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자동문으로, 시각 장애인 등 자동문 개폐확인이 어려운 이용자 등은 여닫이문으로 동선유도(점자블록 설치)
- 주출입구는 가능한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센서범위와 개폐시간은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설치
- 여닫이문의 손잡이는 바형태(수직 및 수평 바 형태)로 설치하며, 편방향으로만 열리도록 설치
- 수직 바는 키가 작은 사람을 배려하여 문 하단까지 설치하며, 여닫이문 경계에는 손끼임 방지설치

[표 5] 출입문 형태

			
자동문, 여닫이문 함께 설치, 동선유도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	자동문 주출입구, 센서범위와 개폐시간은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함	여닫이문 손잡이는 수직 및 수평 바 형태로 설치	수직바는 문 하단까지 설치하며, 문 경계에는 손끼임 방지 설비 설치

#### ② 출입문 전면 단차제거 및 배수처리

- 출입문이 외기와 직접 면하고 있고, 무단차 처리를 해야할 경우 우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문 전면에 배수설비 설치
- 배수설비와 함께 지붕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알코브 형태로 설치하여 무단차 처리로 인한 우수 피해 최소화

[표 6] 출입문 전면 단차제거 및 배수처리

			
출입문 전면 무단차 처리 및 배수 설비 설치	출입문 전면 무단차 처리 및 배수 설비 설치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알코브 형태로 설치하여 우수 피해를 최소화	출입문 전면 무단차 처리 및 배수 설비 설치

### 4) 내부시설

#### ① 복도 및 홀과 내부출입문

- 복도 및 홀의 바닥재질 전체를 논슬립재질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안전통로(1.5m이상)만을 버너구이 등으로 논슬립 처리(보행안전통로는 출입구에서 수직이동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까지 연속적으로 설치)
- 장애인 관련 시설은 벽부 손잡이 및 하부 킥플레이트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 및 지팡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함

- 복도 및 홀 내 장애물, 휴식공간, 독립기둥 등이 있을 경우 바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 미닫이 혹은 여닫이문인 경우 출입문 전후 충분한 활동공간 및 출입문 옆 날개벽 공간 0.6m이상을 확보

[표 7] 복도 및 홀과 내부출입문

			
논슬립 처리된 보행통로를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인 등 복지 관련시설은 벽부 손잡이와 킥플레이트 설치	통로상 장애물 등은 바닥재질 변화를 주어 경고기능 확보	출입문 전후 활동공간 및 출입문 옆 날개벽 공간 확보

#### ② 보행장애물 제거

- 계단 하부 등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은 충돌방지 재료로 마감 및 하부 접근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화단, 수납공간 등을 활용)
- 복도 및 홀 등에 독립기둥 등이 있어 보행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둥 주위 휴게 의자설치, 바닥재질 변화 등을 주어 보행자 부딪힘 사고를 방지함
- 보행통로상 돌출되어 있는 장애물(소화기 등)은 벽부 매립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처리





[표 8] 보행장애물 제거

			
계단 하부 등의 부딪힘 위험 존재 구간에 접근 경고시설 설치	기둥 주위 휴게의자 등을 설치하여 충돌 방지 기능 확보	벽부 보행장애물을 매립하여 보행 방해요소 제거	기둥주위 바닥재질 변화를 주어 접근 경고기능 확보

#### ③ 계단, 경사로 및 승강기

-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 점자블록 설치 및 손잡이 부분 0.3m 연장하여 설치하였으며, 측면 추락방지턱 설치 및 계단코에 논슬립 띠 등을 설치하여 식별 및 안전성 확보
- 계단 손잡이의 수평연장 부위에 층수 및 방향을 안내해주는 점자표지판 부착
- 경사로는 1/12이하의 기울기로 설치하며, 유효폭은 1.5m이상 확보
-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0.65m내외의 높이에 손잡이 추가 설치 (2단설치)
- 승강기 조작판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 키가 작은 사람 및 큰사람 모두를 배려하여 외부 조작기를 이단 설치, 어려운 경우 1.1m 내외의 높이로 설치
- 승강기 내부 조작 설비는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

[표 9] 계단, 경사로 및 승강기

			
논슬립 처리된 계단 바닥과 사용하기 편리한 손잡이 연장설치	철타면과 디딤면의 식별성을 확보하여 발 헛디딤 사고 방지	1/12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손잡이 2단설치	외부조작기 이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1.1m내외의 높이로 설치

5) 위생시설

① 장애인화장실의 접근과 출입문

- 장애인용 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하였으며, 일반화장실과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 가족화장실 내부에 간이 샤워시설, 유아베드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 동반자도 배려
- 화장실 안내판은 시설 내부의 기능과 구조를 알 수 있도록 그림, 외국어, 점자를 함께 병기하여 설치
- 장애인용 화장실은 가능한 자동문으로 설치하였으며, 위생시설 내 시각, 청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자동문이 아닌 미닫이, 접이식 혹은 여닫이문인 경우 출입문 날개벽 공간을 확보하고, 잠금장치 등은 걸쇠형 등 손이 불편한 사람도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

[표 10] 장애인화장실의 접근과 출입문

			
일반화장실과 구분하여 다목적 화장실 설치	내부에 유아 동반자를 배려한 설비도 함께 설치	자동문으로 설치 및 위생시설 내부에 시각, 청각 경보장치 설치	출입문 옆 날개벽 공간 확보 및 잠금장치는 손이 불편한 사람도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

② 대변기 및 소변기

-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에 등받이 등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 확보 및 비상호출장치, 시각·청각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 세정장치는 센서형으로 설치하였으며, 보조 손잡이 등은 차갑지 않은 재질을 사용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청소 등의 운영상 편의를 고려한 벽부형은 하부 높이가 0.35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소변기 보조 손잡이는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

[표 11] 대변기 및 소변기

			
대변기에 등받이 설치 및 비상호출장치와 시각·청각 경보장치 설치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및 센서형 세정장치	바닥부착형 소변기와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벽부형 소변기 하단은 바닥에서 0.35m 이하로 설치

③ 세면대

- 장애인 화장실 내에 설치되는 세면대는 대변기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된 형태로 설치
- 세면대 거울은 전면 거울로 하단이 바닥에서 0.9m이하가 되도록 설치 및 보조 손잡이는 공간 여건에 따라 상하 회전형으로 설치
- 일반화장실 내 세면대는 카운터형으로 하부공간 확보된 형태로 설치
- 어린이 등 키가 작은 사람을 배려하여 높이가 낮은 세면대를 추가하여 설치

[표 12]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된 세면대 설치	공간 여건에 따라 상하회전형손잡이 설치 및 전면거울	하부공간 확보된 카운터형 세면대 및 전면거울	키가 작은 사람을 배려한 낮은 높이의 세면대

6) 안내 및 기타시설

① 종합안내판 및 안내데스크

- 종합안내판은 촉지도식 안내판과 함께 설치하며, 음성안내, 직원호출벨 등을 함께 설치
- 가능한 휠체어 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 벽부 방향안내, 승강기 내부 등의 일반안내판에 점자안내판을 함께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 안내데스크는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공간이 확보된 형태로 설치

[표 13] 종합안내판 및 안내데스크

			
종합안내판은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직원호출벨 등과 함께 설치	일반안내판에 점자를 병기하여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안내시설로 설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출입구에서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	하부공간이 확보된 형태로 서서 이용하는 사람과 앉아서 이용하는 사람 모두를 배려하여 2단으로 설치

#### 4. BF인증사례 분석의 시사점

BF인증 사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BF인증 평가항목 기준을 준용하여 조사한 내용을 유형화하면 이동과 접근, 내부동선과 화장실 그리고 안내데스크(길찾기)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의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1) 동등한 사용의 공평성원칙 관련해서는 이동과 접근 및 내부동선에서 보행안전통행확보와 단차제거(무단차)로 나타난다. 즉 장애물구역의 설치로 보행에서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보행안전통로의 명확한 경계설정으로 안전성(사용상의 실수와 사고에 대한 포용) 및 식별성(인지 가능한 정보제공)과 연관된다.

2) 사용의 유연성원칙 관련해서는 다양한 신체조건에 따른 사용자관점에서의 선택성, 즉 동선 상의 경로에서 계단, 경사로, 승강기, 출입방식과 손의 도달범위에 따른 손잡이 등에서 나타나며, 직관적인 단순성 원칙은 출입구의 직관적 인지 등에서 일

부 나타나지만 건축공간의 표현과 간결한 동선관계 등 전체적인 공간의 질적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계량화된 객관적 인증지표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3) 인지가 가능한 정보제공의 식별성 원칙에서는 유도 및 안내를 위한 문자 또는 점자정보제공과 안전성과 연관된 경고 및 충돌방지 안내로서의 바닥재질변화와 점자블록사용 등으로 다소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은 물리적 노력의 효율성은 대부분 휠체어사용자와 관련된 자동문, 승강기, 출입문 전후 및 날개공간 확보 등과 같은 충분한 면적과 공간의 접근성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은 상호연관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적이다. 즉 통합적 특성이다. 따라서 BF인증기준에 따른 시설의 개별적인 설치만이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을 창의적인 디자인의 관점으로 각각의 공간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14] BF 인증사례에서 나타난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UD 7원칙/ BF인증사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이동 (Mobility)	접근 (Access)	동선 (Circulation)	위생 (Toilet & Care)	길찾기 (Wayfinding)	이동 (Mobility)	접근 (Access)	동선 (Circulation)	위생 (Toilet & Care)	안내시설 (Wayfinding)
1. 공평한 사용 (공평성)		모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접근로		출입문 전면 무단차 처리 및 배수 설비 설치		눈슬림 처리된 보행통로를 연속적으로 설치		하부공간 확보된 카운터형 세면대 및 전면거울		일반안내판에 점자를 병기, 모두가 이용 가능한 안내시설
2. 유연한 사용 (유연성)		선택이 가능한 이동경로		자동문, 여담이문 함께 설치, 동선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		1/12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 어린이 등을 배려한 2단 손잡이		내부에 유아 동반자를 배려한 설비도 함께 설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2단 설치된 안내데스크
3. 직관적인 단순성 (단순성)		보행안전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보행영역 구분		수직손잡이 문 하단까지 설치, 이용자의 직관적 사용유도		기동 주위 휴게의자 등을 설치하여 충돌방지 및 직관적 이용		벽부형 대변기와 직관적 이용이 가능한 등받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주 출입구
4. 인지 가능한 정보제공 (식별성)		무단차 연결 및 출입구/주요시설에 대한 위치와 방향안내		지형을 활용한 완만한 우회접근로 및 안내시설 설치		통로상 장애물 등은 바닥 재질 변화를 주어 경고 기능 확보		일반화장실과 구분하여 다목적 화장실 설치		철타면과 디딤면의 식별성을 확보하여 발뺀 사고 방지
5. 사용상의 실수에 대한 용인 (안전성)		보행영역의 재료구분 및 완충공간 확보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보행안전통로 연속설치		계단하부충돌 위험구간에 접근경고 방지시설		바닥부착형 소변기와 차갑지 않은 재질 손잡이		기동주위 바닥 재질 변화로 접근 경고기능 확보
6. 적은 물리적 노력의 효율성 (효율성)		무단차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된 승강기		자동문 주출입구, 충분한 센서범위와 개폐시간		승강기조작기 이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1.1m내외높이 설치		자동문으로 설치 및 위생시설 내부에 시각, 청각 경보장치		종합안내판은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 직원 호출벨 등과 함께 설치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과 공간 (접근성)		고원식 횡단 보도와 방향 전환을 위한 충분한 수평 공간 확보		보행통로 및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		출입문 전후 활동공간 및 출입문 옆 날개벽 공간 확보		출입문 옆 날개벽 공간 확보 및 사용하기 편리한 잠금장치		하부공간이 확보된 형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안내데스크

## 5. 결론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도시 및 건축의 물리적 환경구축 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는 모두를 위한 BF 인증은 2장의 개념적 고찰과 3장의 사례조사 및 분석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이며, 이러한 디자인의 접근방식을 건축분야에서 일반화 하는 것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시작이자 기본적 토대가 되므로 4장에서 도출한 BF 인증사례에서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접근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토대로 공공적 건축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도시 및 건축의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건축(이하 유니버설건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레임이다. 하지만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포괄성은 'Universal' 인 동시에 'Inclusive'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다양성을 위한 디자인인 동시에 사용자의 참여과정을 내포한다. 보편적인 일반화를 추구하지만 획일화된 모노톤의 단조로움이 아니라 다양한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증제와 같은 단일한 프레임으로는 충분히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증제는 지표에 의한 보편적인 일반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4장의 주요 시사점에서 살펴보았듯이 BF인증사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가운데 보행안전통행확보와 단차제거(무단차), 자동문, 승강기, 출입문 전후 및 날개공간 확보, 바닥재질변화와 점자블록사용 등과 같은 계량화된 객관적 인증지표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공평성과 유연성, 안전성과 접근성 그리고 획일화된 식별성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니버설건축을 보다 완성도 높게 지속적으로 인권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점진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Universal'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함께 상호보완할 수 있는 'Inclusive'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Inclusive'의 의미는 사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용자의 참여가 디자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보완되어야 할 유니버설건축의 실천적 프레임은 다양한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의 결과가 건축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의 양면적 포괄성은 씨줄과 날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나가는 날줄과 그 날줄에 촘촘히 매꾸어주는 씨줄이 있어 옷감을 직조하는 것처럼 'Universal'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인증제도는 날줄이 되고, 'Inclusive'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한 소통의 프레임은 씨줄이 될 때 진정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건축이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실현 될 것이다. 즉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적극적인 소통의 참여 디자인으로 모두에게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는 것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가,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 및 사용할 수 있는가, 모두가 주위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적 7원칙에 대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최선의 건축적 해답을 찾음으로 유니버설건축의 완성도를 보다 높일 것이다.

3) 유니버설건축이 일반화되어 일상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높이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모두를 위한 인간애(人間愛)적인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창조적인 디자인 어프로치로서의 건축설계개념과 인식개선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준'을 통한 '표준의 달성'이 아니라, 최선의 '디자인'을 통한 '우수사례의 축적'이 점점 많아질 때 유니버설건축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을 넘어선 최선의 디자인으로 우수사례가 되는 것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사: 본 연구는 2024년도 한경국립대학교 연구년에 의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적 우수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참고문헌

- 성기창, 2007a,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축계획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 성기창, 2007b,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적 무장애 생활환경", 건축가
- 성기창, 2011, "무장애도시를 위한 독일의 제도화 현황", 글로벌 복지동향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2016,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2017,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Axel Stemshorn, 1999, "Bauen fuer Behinderte und Betagte", Verlagsanstalt Alexander Koch GmbH
- Bernhard Schaefers, 2003, "Architektur-Soziologie", Leske+Budrich
- D.P.Philippen, 1992, "Wohnen ohne Barrieren", Schriftenreihe des Reichsbundes-Folge 48
- Null, Roberta, 2014, "Universal Design: principles and models", New York: CRC Press
- Roland Koenig, 2005, "Leitfaden barrierefreier Wohnungsbau", Fraunhofer IRB Verlag
- Steinfeld, E; Maisel, J, L, 2012,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Universal Design Center, 1997,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접수 : 2025년 11월 18일  
1차 심사완료 : 2025년 11월 26일  
재제확정일자 : 2025년 12월 5일  
3인 익명 심사 필

